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신청서 (디폴트옵션 지정)

본인확인	판매직원	담당	책임자

* 편입하는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가능

전 산 인 자 란

1. 기본정보

20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제도	<input type="checkbox"/> DC/기업형IRP(회사명 또는 계좌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고객 단위로 사전운용지정방법 지정(계좌 복수일 경우 1개만 지정))		

2. 투자권유희망 여부(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시 투자권유희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경우 투자권유희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투자권유를 희망함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상품 가입 불가(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 “초저위험”만 가능)

[가입자 자필기재 :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가입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상단에 확인 내용을 자필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인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2)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으로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3)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의 별도의 의사가 있기 전까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운용상품 중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이율보증형보험), ELB 등)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아래의 상품 중 하나만 선정하실 수 있으며, DC 가입자의 경우 회사 규약에 명시한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1개)	상품명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상품구성	해피콜* 실시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초저위험(5등급)	원리금보장상품(100%)	택1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모바일웹)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저위험(4등급)	원리금보장상품(40%)+집합투자증권(60%)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2	저위험(4등급)	원리금보장상품(40%)+집합투자증권(60%)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5%)+집합투자증권(75%)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2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0%)+집합투자증권(80%)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2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 해피콜은 일정횟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 손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방법으로도 실시합니다.



4. 금융소비자 구분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대리인의 경우 “가입자”를 기준으로 작성)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금융소비자 구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성 상품 (디플트옵션 초저위험)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파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피한정후견인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문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성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이나 상품설명을 희망
투자성 상품 (디플트옵션 저/증/고위험)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일반투자자 선택)
	전문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전문투자자 선택)

1) 설명의무 이행 확인 : 상품설명서로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하였다라는 기재를 하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발생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 듣고 이해함]

2) 계약서류 제공 의무 : 선택하신 개별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일체를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추후 권리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수령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알림톡(발송실패시 LMS 발송)
-----------	--

* 계약서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신청서 사본 또는 전산출력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 지정 확인서(계약서)

** 약관 : 개별상품 약관 *** 상품설명서 : 개별 상품(투자)설명서 및 디플트옵션 포트폴리오/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가입자 자필기재 :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함]

5. 고객 유의사항

디플트옵션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 등)으로 운용방법을 설정하여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난시점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으로 만기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알림톡,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DM으로 발송됩니다. 상품 만기도록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으로 매수되는 시점까지 만기 자금은 금리가 낮은 [연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주간의 대기기간동안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점 가입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은행은 가입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하였으나, 납입 주기로 인하여 만기가 여러 번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이를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최초 만기시에만 가입자 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는 만기 도래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내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디플트옵션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경우 내 구성 상품의 비중 대로 이루어집니다. 정기예금이 포함된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예금자 보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DC,IRP)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정기예금, GIC)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하되,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DC,IRP)에 가입한 경우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 전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이 적용일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이 적용일자는 다음 영업일로 순연립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내의 제공 상품은 개별 상품 제공기관에서 개발 및 관리하며, 상품 도입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1599-1111, 1588-1111), 상품별 제공 금융회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 지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기에, 신청서의 내용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플트옵션) 지정을 신청합니다.

가입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